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진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3 발의연월일: 2021년 3월 10일

발 의 자 : 김진희, 최성임, 김영실 이정애, 이영화, 워병일

박성찬

1. 제안이유

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내용을 명시함(안 제24조)
- 나. 자치센터의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보완함(안 별표1)
 - 회의실, 전시실 등 시설을 4시간 초과 사용할 경우 징수기준 명시
- 다.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에 대한 감면 대상을 관련 법률에 맞도록 대상 확대(안 별표3)
- 라. 그 밖에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예산수반사항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와"를 "다음과"로 하고, 같은 조제1호 중 "문화 복지 편익시설"을 "문화·복지·편익시설"로 하며, 제2호 중 "관할 구역내"를 "관할구역 내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관할 구역 내"를 "관할구역 내"로 한다.

제6조 중 "시장"을 "남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"감안하여"를 "고려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인정하는 경우에는"을 "인정할 때에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감안하여"를 "고려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10인이내"를 "10명 이내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강구"를 "마련"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범위안"을 "범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제10조 규정에 의한"을 "제10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아니한"을 "않은"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관할구역내"를 "관할구역 내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"범위안"을 각각 "범위"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제10호에 의한"을 "제10조에 따른"으로, "20일이내"를 "20일 이내"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5호 중 "관하여 필요"를 "필요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"으로 한다.

제17조제5항 중 "관할구역내"를 "관할구역 내"로, 제6항 중 "1월이내"를 "1월 이내"로 하고, "새로이"를 "새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"1회에 한하여"를 "한 차례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"금고이상"을 "금고 이상"으로 한다.

제17조의2제6항 중 "관하여 필요한"을 "관한"으로 한다.

제18조제4항 중 "소정의"를 "일정한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"금고이상"을 "금고 이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 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개의"를 "시작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아니한다"를 "않는다"로 한다.

제23조 단서 중 "범위안"을 "범위"로 한다.

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복, 업무수첩 등

제26조 중 "조례 시행에 관하여"를 "조례의 시행에"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 1]

사용료 징수기준(제10조 관련)

구분	사용목적	기본시간	요금	비고
회의실, 전시실 등	회의, 교육 등	2시간	20,000 원	 ○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○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는 기본시간 요금의 30%로 산정함. ○ 초과 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한정함. ○ 총 사용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시 기본시간부터 새로 적용함.
	전시회	1일	30,000원	
헬스장	헬스	1개월	20,000원	

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 3]

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(제10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	감 면 대 상
사용료	100%	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수강료 * 분기당 1인 1프로그램에 한정하여 감면	50%	 4. 「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.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(다만, 단체의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에 한정함.)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 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<u>다음 각 호와</u>	<u>다음과</u>
같다.	
1. "주민자치센터"란 제1조의	1
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	
수 있도록 읍·면·동에 설치된	
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	<u>문화·복지·편익시설</u>
프로그램을 총칭한다.	
2. "단체"란 <u>관할 구역내</u> 에 있는	2 <u>관할구역 내</u>
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,	
직능·자생단체, 취미·동호	
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.	<u>.</u>
제4조(설치등) ① 자치센터는 읍·	제4조(설치등) ①
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설	
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
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	
읍·면·동의 <u>관할 구역 내</u> 에 있	<u>관할구역 내</u>
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	
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	
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 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<u>시장</u>	제6조 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<u>남양</u>
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	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
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	

행할 수 있도록 읍·면·동에 필 요한 시설과 프로그램(이하 " 시설 등" 이라 한다)을 갖추어 야 한다.

제7조 (운영) ①・② (생 략)

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 된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<u>감안하여</u> 제10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시장은 필요하다고 <u>인정하는</u>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·면·동장의 건의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

 제7조 (· 음) ③		1 • (2 (현행과	· 같
<u>고려ㅎ</u>	<u> 여</u>				
 				· 인정힐	
<u>에는</u> 		 			
<u>(5)</u>					

되,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<u>감안하여</u>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⑥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·개발, 협조·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, 관련분야 종사자,시민·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이내로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수 있다.

⑦시장과 읍·면·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과 의 연계방안을 적극 <u>강구</u>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사용료 등) ①·② (생략)

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 1 및 별표 2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 에서 정하고,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·면· 동장이 정하며, 수강료의 경우 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위원회 에서 의결로 정한다.

<u>고려하</u>
<u>o</u>
6
<u>10명</u>
이내
~~~~. ⑦~~~~~~~
<u>마련</u>
제10조 (사용료 등) ①・② (현행
과 같음)
<u>범위</u>
•

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⑤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----- 따른-----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기준과 감 면비율 등은 별표 3으로 정한 다. ⑥·⑦ (생 략) ⑥·⑦ (현행과 같음) 제11조 (이용등) ①・② (생 략) 제11조 (이용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③---- 제10조에 따른 -----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 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 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 ④읍·면·동장은 주민이 그 의 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----- 양은 -----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⑤ (생략) ⑤ (현행과 같음) 제12조 (주민참여) ① (생략) 제12조 (주민참여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② 관할구역 내-----시장 또는 읍·면·동장에게 자치

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

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#### ③ (생략)

- 제13조 (수당) ①자원봉사자에게 는 예산의 <u>범위안</u>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는 예산의 <u>범위안</u>에서 강사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14조 (보고) ① (생략)

- ②읍·면·동장은 제10호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6조 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다.
  - 1. ~ 4. (생략)
  - 5.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②<u>제1항의 규정</u>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 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

<u>.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 (수당) ①
<u>범위</u>
2
범위
제14조 (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0조에 따
른
<u>20일 이내</u>
제16조 (기능) ①
,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필요
②제1항

의결로 결정한다. 제17조 (구성등) ① ~ ④ (생 략) 제 ⑤ 고문은 읍·면·동장이 위촉하 되, 해당 읍·면·동의 관할구역내 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 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 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 하다. ⑥읍·면·동장은 고문을 포함 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 ·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 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⑦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 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1회 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⑧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

자격을 상실한다.

·
17조 (구성등) ① ~ ④ (현행과
같음)
⑤
관할구역 내
<b>.</b>
6
<u>1</u> 월 이내
<u>새로</u>
⑦
<u>ট</u>
<u>차례만</u>
8
<u>금고 이상</u>

제17조의2(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 제17조의2(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 위원회) ① ~ ⑤ (생 략) 위원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 정 절차와 방법, 위원회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-- 관한-----으로 정한다. 제18조 (위원장의 직무등) ① ~ | 제18조 (위원장의 직무등) ① ~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| ④----- 일정한 -----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,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 자, 근무시간, 자원봉사내용 등 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 ⑤ (생략) ⑤ (현행과 같음) 제20조 (해촉) ①읍・면・동장은 | 제20조 (해촉) ①-----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, 이 경우 제5호 부터 제6호 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1. ------- <u>금고 이상</u>-----및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 은 경우 2. ~ 6. (생 략) 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②----- 따른 ------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--------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-------간으로 한다.-------

#### 제21조 (회의) ① (생략)

- ②제1항에 <u>의한</u>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 다.
-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</u>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.
- ④고문 및 읍·면·동장은 위원 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표결권은 갖지 <u>아니</u> 한다.
- 제23조 (실비보상등)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지급할 수 있다.
- 제24조(사기진작)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0	
	,
제21조	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<u>(2)</u>	따른
<u> </u>	<u> </u>
3	
	<u>시작</u>
4)	
<u>다</u> .	
제23조	(실비보상등)
	•
	<u>범위</u>
	·
제24조	(사기진작)

- 1. 2. (생략)
- 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읍·면·동장이 운영세칙으 로 정한다.
-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복, 업무수첩 등 제26조 (시행규칙등) 이 <u>조례 시</u> 제26조 (시행규칙등) -- <u>조례의</u> 시행에 -----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- 관련근거 : 「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24조(사기진작)
- 동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지는 않음 (연간 1억원 미만)

#### <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>

항목	산출내역	예상 예산액	증감여부
계		11,550천원	증
단체복 제작	25천원 × 350명 = 8,750천원	8,750천원	증
수첩 제작	8천원 × 350명 = 2,800천원	2,800천원	증

※명수는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최대 정수 기준임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### 4. 작성자

행정기획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

### 붙 임 관계법령

## 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배우자
- 2. 자녀
- 3. 부모
- 4.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
-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